



의안번호	제175호
회의 연월일	2024. 12. 2. (제553회 회의)

심의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(행정안전부령)

제출부서	경 찰 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4. 11. 21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75호, 2024. 3. 19. 공포, 2025. 3. 20. 시행됨에 따라,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
에 필요한 교재,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) ① 영 제32조의2

에 따른 교육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,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.

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 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.

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

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

제 호				
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				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	
이수 과정 차기	과정명		이수일자	
교육기간	년 1월 1일 ~ 년 12월 31일			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경찰청 로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한국도로 교통공단 로고				

운전자용: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유의사항

-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「도로교통법」 제56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8조의2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) ① 영 제32조의2에 따른 교육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,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.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.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락처	(02) 3150 - 0659